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강석철  
전화 061-729-4322 / 팩스 061-729-4556

**보도자료**  
2024. 10. 23.(수)

제 목

# 「순천 10대 여학생 살인사건」 수사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순천시 대로변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순천 10대 여학생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0. 23.) **피고인 박대성**(남, 30세)을 **살인,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사건송치 전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압수수색,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다수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 본건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보행 상태, 피고인과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 아울러, 피고인이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후 **계속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규명하여 추가 입건**하였음

-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망 피해자 유족과 목격자에게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향후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향후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수행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 사건개요

### 가. 피고인

- 박대성(남, 30세, 배달음식점 운영)

### 나. 공소사실 요지

- '24. 9. 26. 00:32경 전남 순천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앞에서 식칼을 들고 주변을 살피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800m 가량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00:42경 피해자의 복부, 등,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 **[살인]**
- 이어서, 같은 날 00:50경부터 01:45경까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살인에 사용한 식칼을 소지한 채 △△△ 주점과 □□□ 노래방에 각 방문하여 위 업주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 **[살인예비]**

## 2 수사경과

- '24. 9. 26. 사건 발생(00:42), 긴급체포(02:15)
- '24. 9. 28. 구속영장 발부
- '24. 10. 4. 구속 송치
- '24. 10. 4.~22. 현장 검증, 추가 압수수색 등 전담수사팀 보완수사
- '24. 10. 23. 구속 기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가. 피고인의 심리적·경제적 상태 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

- 피고인의 과거 학교·군복무 기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격 형성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규명

※ 검찰 포렌식 결과, 불법대출 등 곤궁한 경제적 상황, 범행 직전 흥기를 찍은 사진 등 본건 범행 결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입증할 추가 단서 확보

### 나. 범행 동기 규명

- 통합심리분석, 정신의학 분석, 이동동선 분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누적되어 왔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

### 다. 심신장애 여부 대한 심층 수사

-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범죄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 라. 살인예비 혐의 추가 입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범죄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1시간 동안 순천 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추가 살해를 하려고 한 혐의를 규명하여 살인예비죄 추가 입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

### 마.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 순천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범행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 4

### 향후계획

- 순천지청은 향후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특정 다수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임 ☐